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06
----------	-------

발의연월일 : 2023. 12. 13.

발 의 자 : 강병원 · 진선미 · 권칠승
이동주 · 임종성 · 천준호
위성곤 · 설 훈 · 임호선
오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도심 거리나, 지하철, 산책로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흥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라는 특징이 있음.

이에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이러한 특징을 지닌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범죄의 동기를 분석·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고 체계적 대응책을 수립해 오고 있음.

이에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연구·분석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범죄 동기 유형을 포함한 범죄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범죄 동기 유형별 대응 및 예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범죄통계의 작성 등) ① 경찰청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범죄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1.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 범죄 발생 시간·장소, 범죄 계획성, 범행도구 사용 현황
3. 범죄자 성별·연령·전과 현황 및 범행 시 정신질환 현황
4. 피해자 성별·연령·범죄자와의 관계 현황
5. 범죄 동기 현황(보복, 가정불화,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등에 대한 편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범죄자 마약류 상용 여부 현황
7. 주요 범죄 발생 추세 및 범죄피해 추세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범죄통계를 조사·분석하여 범죄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분석보고서에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이하 “이상동기범죄”라 한다)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죄통계 작성·관리·공개 및 이상동기범죄를 포함한 범죄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범죄예방정책협의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범죄 동기 유형별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범죄예방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범죄예방정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

2. 시·도지사

3. 교육감

4. 그 밖에 범죄 동기 분석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범죄예방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죄 동기 유형별 예방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범죄 동기 유형별 예방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범죄예방정책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통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범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2(범죄통계의 작성 등)</u> <u>① 경찰청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범죄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u> <u>1.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u> <u>2. 범죄 발생 시간·장소, 범죄 계획성, 범행도구 사용 현황</u> <u>3. 범죄자 성별·연령·전과 현황 및 범행 시 정신질환 현황</u> <u>4. 피해자 성별·연령·범죄자와의 관계 현황</u> <u>5. 범죄 동기 현황(보복, 가정불화,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등에 대한 편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 <u>6. 범죄자 마약류 상용 여부 현</u>

황

7. 주요 범죄 발생 추세 및 범죄피해 추세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범죄통계를 조사·분석하여 범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분석보고서에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이하 “이상동기범죄”라 한다)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죄통계 작성·관리·공개 및 이상동기범죄를 포함한 범죄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신 설>

정한다.

제33조의3(범죄예방정책협의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범죄 동기 유형별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범죄예방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범죄예방정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

2. 시·도지사

3. 교육감

4. 그 밖에 범죄 동기 분석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범죄예방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죄 동기 유형별 예방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범죄 동기 유형별 예방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범죄예방정책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